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운영지침

제정 2015. 03. 06.

개정 2021. 05. 07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학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과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절차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견수렴) 의견수렴의 대상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(파견·휴직 포함)으로 한다.

제3조(학장후보자격) 학장후보의 자격은 정년보장을 받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의 정교수로 한다.

제4조(학장후보추천위원회) ①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 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부른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해체는 「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」 제2조②항 및③항에 따른다.

제5조(학장 입후보 등록) 학장 후보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의견수렴일 10일 전까지 약력(서식 1)과 후보 출마 소견서(서식 2)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의견수렴의 시기) 의견수렴은 학장 임기만료일 전 4주에서 6주 사이에 실시하며 의견수렴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임기만료 전 궐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궐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장후보 추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견발표) ①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약력 및 소견 발표용 유인물을 전체 교수에게 배포하여야 하며, 입후보자는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입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견수렴의 방식 및 추천) ① 의견수렴은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전임 및 기금교원(파견·휴직 포함)의 직접·비밀 의견수렴 방식으로 실시한다.

② 1차 의견수렴에서 의견수렴대상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의견수렴을 종결한다.

③ 1차 의견수렴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다수로 2인을 선정하여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한다. 단, 각 입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2인을 발표한다.

④ 1차 의견수렴에서 2위가 2인 이상 동수로 나왔을 경우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의견수렴하여 최다득표자 1인을 선정하여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한다.

⑤ 2차 의견수렴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더라도 의견수렴을 종결한다.

⑥ 의견수렴이 종결되면 위원장은 상위 득표자 2인을 득표수와 함께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단, 동점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총장에게 추천한다.

제9조(초임학장의 연임 추천) ① 초임 학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초임 학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주 전까지 연임 희망서(서식3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6조~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임 학장의 연임 희망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직접·비밀의견수렴방식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 및 기금교원(파견·휴직 포함)재적인원 과반수의 의견수렴과 유효 의견수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초임 학장의 연임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③ 제②항의 연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“부결”일 경우에는 제2조~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장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현 학장은 당해연도 학장후보에 재등록 할 수 없다.

제10조 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 및 법적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및 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회의결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제107호, 2015.3.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선거 규정,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(제146호, 2021.5.7.)

이 지침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